

자동차보험 한의과 진료비 합리화한다

- 9일부터 개정안 행정예고... 연간 3~500억원 상당 진료비 절감 효과 기대

- 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는 「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」 및 「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 처리 규정」의 개정안(이하 개정안)을 마련하고, 이를 행정예고('23.11.9 ~ 11.29., 20일) 한다고 밝혔다.
- 이번 개정안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자동차보험 한의과 진료비*를 합리화하고, 한의 진료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‘자동차보험진료수가 분쟁 심의회**’ 의결을 거쳐 마련되었다.
 - * 자동차보험 한의 진료비 '20년 1.1조원 → '22년 1.4조원(27% ↑)
 - ** 자동차보험 진료비 기준의 제개정안 심의, 진료비 분쟁 조정 등을 수행하는 전문기구(의료계, 보험계, 공익위원 등 18명으로 구성)
-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 - (첩약) ①환자 맞춤형 처방을 실현하기 위해 첩약의 사전조제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, ②환자 상태에 기반한 유연한 처방을 위해 1회 최대 처방일수를 현행 10일에서 원칙적으로 7일로 조정하며, ③첩약 내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한의원 등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를 청구하는 경우 첩약 처방·조제내역서의 제출을 의무화한다.
 - (약침) ①경상환자에 대한 과잉진료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상환자에 대한 약침 시술횟수 기준을 구체화*하고, ②약침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약침액은 무균·멸균된 것을 사용하도록 하며, ③약침 내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한의원 등이 진료비를 청구하는 경우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약침 조제내역서의 제출을 의무화한다.
 - * 0~1주간 매일, 2~3주간 주 3회, 4~10주 주 2회, 10주 초과 시 주 1회 이내
- 국토교통부 전형필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“이번 제도개선으로 연간 약 300~500억원의 자동차보험 진료비의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”면서, 자동차보험 진료비 합리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”이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모빌리티자동차국 자동차운영보험과	책임자	과 장	임월시 (044-201-3855)
		담당자	팀 장	신영우 (044-201-4760)
			사무관	김동규 (044-201-4861)

